

- 구민이 참여하는 열린행정소통의 도시 • 사람이 중심에 서있는 교육복지도시 • 글로벌시대를 선도하는 창조도시
-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자족도시 • 삶의 품격을 높이는 문화·예술도시 • 자연친화 녹색성장을 주도하는 건강도시



연수구보

■ 구정 방향 ■

함께 가꿔요!

행복한 연수!

발행·편집인:연수구청장 / 발행처:인천광역시 연수구 / 주소: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호 (우)406-120 ☎ 810-7072 / FAX 810-7139

구보는 공문서로서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람	

부록 제666호 2011. 12. 19.(월)

【고 시】

- 인천광역시연수구고시 제2011-49호(도로구간 및 도로명 폐지 고시) 1
- 인천광역시연수구고시 제2011-50호(연수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고시) 3
- 인천광역시연수구고시 제2011-51호(도로명주소 고시) 7
- 인천광역시연수구고시 제2011-52호(도로명주소 고시) 9
- 인천광역시연수구고시 제2011-53호(도로명주소 고시) 11
- 인천광역시연수구고시 제2011-54호(인천광역시 연수구 도로구간 및 도로명 고시) ... 13

【공 고】

- 인천광역시연수구공고 제2011-930호(인천광역시연수구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6

회							
람							

도로구간 및 도로명 폐지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따라 도로구간 폐지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12월 14일
연 수 구 청 장

1. 고 시 일 : 2011. 12. 14
2. 고시방법 : 구보, 홈페이지, 구게시판
3. 고시내용 : 도로구간 폐지에 관한 사항 (폐지14건)

※ 붙임 참조

4. 기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연수구청 민원지적과 지적도로명팀 (☎810-7986~8)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붙임 : 도로구간 폐지조서 1부.

도로구간 및 도로명 폐지조서

연번	위계	도로명	기초간격	기점	종점	길이	폭	기초번호	폐지사유	폐지고시일
1	길	명심원길	10	동춘동 산55-4	동춘동 산55-40	217	4	1→9	도시개발지역	2011.12.14
2	길	박짓뿔1가	10	동춘동 716-2	동춘동 717-33	313	5	1→23	도시개발지역	2011.12.14
3	길	박짓뿔2가	10	동춘동 714-8	동춘동 559-4	337	5	1→25	도시개발지역	2011.12.14
4	길	시드물1가	10	동춘동 743-16	동춘동 732-3	510	6	1→32	도시개발지역	2011.12.14
5	길	시드물2가	10	동춘동 758-1	동춘동 754-1	345	5	1→18	도시개발지역	2011.12.14
6	길	시드물3가	10	동춘동 752-2	동춘동 산42	348	5	1→27	도시개발지역	2011.12.14
7	길	시드물길	10	동춘동 769-1	동춘동 산65-3	1463	8	1→63	도시개발지역	2011.12.14
8	길	신촌1가	10	동춘동 728-2	동춘동 724	162	4	1→8	도시개발지역	2011.12.14
9	길	신촌2가	10	동춘동 719	동춘동 산53-10	356	3	1→19	도시개발지역	2011.12.14
10	길	자앞1가	10	동춘동 285-1	동춘동 285	138	4	1→8	도시개발지역	2011.12.14
11	길	자앞2가	10	동춘동 278-1	동춘동 291	347	4	1→16	도시개발지역	2011.12.14
12	길	자앞3가	10	동춘동 산54	동춘동 산58	93	4	1→63	도시개발지역	2011.12.14
13	길	자앞4가	10	동춘동 323	동춘동 324-1	130	4	1→8	도시개발지역	2011.12.14
14	길	자앞길	10	동춘동 229-2	동춘동 323	742	4	1→47	도시개발지역	2011.12.14

연수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고시

「유통산업발전법」 제13조의3 및 「인천광역시연수구 대규모점포등의 등록 및 소상공인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규정에 따라 연수구 전통상업보존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2011. 11. 15.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1.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목적

○연수구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전통시장 주변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여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위치 및 범위

○아래 시장의 어느 하나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000미터까지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한다

시장명	시장구역	면적(m ²)	전통상업보존구역 면적(km ²)
옥련시장	옥련동 462-1외 11필지	9,331	4.76
송도역전시장	옥련동 307-1외 17필지	11,613	4.25

3. 전통상업보존구역 관련 도서열람방법

○방문열람 : 연수구청 지역경제과(4층) ☎810-7361

4. 시행일 및 유효기간

○시행일 :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유효기간 : 「인천광역시연수구연수구 대규모점포등의 등록 및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부칙2조에 따른다.

붙임 : 전통상업보존구역 위치도 각 1부. 끝.

옥련시장 전통상업보존구역

Scale = 1 : 4,500



연수구 전통상업보존구역

1. 옥련시장

-범례-

- 시장구역
 - 전통상업보존지역
 - 고속국도
 - 대로
 - 길
 - 구경계
 - 법정·행정경계
 - 지구경계
- 0 90 180 270m
(1cm가 45m임)
축척 = 1 : 4,500

옥련시장

주 소	연수구 옥련동 462-32 일원
개 설 년 도	1996년도
면 적	9331m ²
전통상업보전 구역면적	4.76km ²

송도역전시장 전통상업보존구역

연수구 전통상업보존구역

2. 송도역전시장

-범례-

- 시장구역
 - 전통상업보존지역
 - 고속국도
 - 대로
 - 길
 - 구경계
 - 법정·행정경계
 - 지구경계
- 0 90 180 270m
(1cm가 45m임)
축척 = 1 : 4,500

송도역전시장

주 소	연수구 옥련동 308 일원
개 설 년 도	2005년도
면 적	11613m ²
전통상업보전 구역면적	4.25km ²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변경)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 12. 19.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 도로명주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량로155번길 46외 2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부여(변경)사유	도 로 명 고 시 일	도 로 명 부 여 사 유
		별 도 열 랐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연수구청 민원지적과(☎810-7986~7988)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1. 12. 19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2013. 12. 31.까지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도로명주소 부여고시조서

NO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부여 사유	도로명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1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477-9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량로155번길 46	신축	2009-07-09	청량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1,55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2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402-5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량로184번길 4	신축	2009-07-09	청량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1,84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3	인천광역시 연수구 선학동 99-5, 선학 동 99-9	인천광역시 연수구 예술로22번길 42-1	신축	2009-07-09	예술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22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제4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변경)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 12. 19.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 도로명주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비류대로320번길 20외 1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변경사유	도 로 명 고 시 일	도 로 명 부 여 사 유
		별 도 열 략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연수구청 민원지적과(☎810-7986~8)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1. 12. 19.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2013. 12. 31.까지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도로명주소 부여고시조서

NO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부여 사유	도로명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1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동 589	인천광역시 연수구 비류대로320번길 20	미부여	2009-07-09	비류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3,20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2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32-17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카데미로 268	미부여	2009-05-14	인천대학교를 지나는 도로로 교육기관을 반영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 폐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 12. 19.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 도로명주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257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도로명주소 폐지사유
	별 도 열 랐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민원지적과(☎810-7986~8)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도로명주소 폐지고시조서

NO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도로명폐지사유
1	인천광역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257	2011-12-19	건축물 멸실

인천광역시 연수구 고시 제 2011-54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도로구간 및 도로명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 도로구간 및 도로명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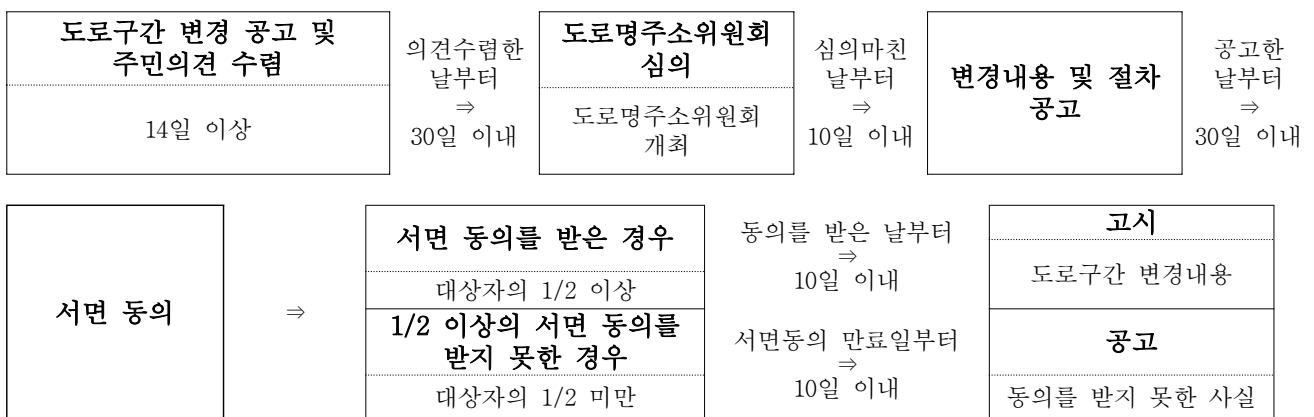
2011년 12월 19일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1. 고시기간 : 2011. 12. 19. ~ 2012. 1. 2. (15일간)
2. 고시방법 : 연수구 공보, 홈페이지 및 구·동 게시판 게재
3. 고시내용 : 인천광역시 연수구 도로구간 및 도로명
※ 붙임 조서 및 도면 참조(연수구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4. 고시일자 : 2011. 12. 19.

5. 도로구간 등의 변경요건 및 절차

가. 도로구간 변경



나. 도로명 변경

도로명 변경 신청 등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건축물 소유자, 건물점유자(19세 이상 세대주)의 5분의1 이상이 신청하는 경우 .도로명주소의 활용도와 편리성 향상을 위해 구청장이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의 경우 신청받은 날부터 ⇒ 10일 이내	주민 의견 수렴 공고 14일 이상	의견수렴한 날부터 ⇒ 30일 이내	도로명주소 위원회 심의 도로명주소 위원회 개최	심의마친 날부터 ⇒ 10일 이내
공고 및 신청인 통보 . 심의 결과 . 내용 및 절차	공고한 날부터 ⇒ 30일 이내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 주소사용자의 1/2 이상 서면 동의를 못 받은 경우 주소사용자의 1/2 미만	동의 얻은 날로부터 (동의 생략 포함) ⇒ 10일 이내 공고일로부터 ⇒ 40일 이내	고시 및 신청인 통보 변경사항 및 변경기준일 공고 및 신청인 통보 결과 통보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민원지적과 (☎ 810-7986~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여조서

연번	위계	도로명	유사도로명	도로명코드	기초 간격 (M)	도로구간		길이 (M)	폭 (M)	기초번호		부여사유
						기점	종점			기점	종점	
1	길	송도국제대로372번길	송도국제대로	4256366	20	송도동 13-25	송도동 13-25	505	20	1	47	송도국제대로 시작점에서 약3,720m지점의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인천광역시연수구 공고 제2011-930호

「인천광역시연수구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연수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1년 12월 13일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인천광역시연수구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구민들에게 도시농업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친환경 녹색공간 확충을 통해 지속가능한 생태도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기반 조성

2. 주요내용

- 가.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구민들에게 도시농업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지속가능한 생태도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 규정(안 제1조)
- 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안 제6조) 및 도시농업에 관한 주요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시농업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다.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텃밭을 조성하고 경작활동 지원(안 제15조) 및 다양한 형태의 상자텃밭 보급에 관한 사항(안 제17조)

라. 도시농업에 대한 기술 보급 및 친환경적인 생활 실천을 위해 도시농업에 대하여 교육실시에 관한 사항 (안 제19조)

마. 도시농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22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 (☎032-810-7338/ 참조 : 환경보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사항 등

붙임 인천광역시연수구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인천광역시연수구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구민들에게 도시농업의 참여와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친환경 녹색공간 확충을 통해 지속 가능한 생태도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시농업”이란 도시지역에 있는 토지, 건축물 또는 다양한 공간을 활용하여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생산하기 위한 각종 경작행위와 여가·체험적 성격의 농사활동을 말한다.
2. “도시텃밭”이란 도시농업이 이루어지는 토지 및 각종 유휴지, 자투리 땅, 공원 녹지, 그 밖의 공간 등을 이용하여 농작물을 재배하는 텃밭을 말한다.
3. “상자텃밭”이란 인공지반인 옥상, 베란다 또는 도시의 다양한 공간에서 농작물을 재배하는 상자형태 등으로 이루어진 텃밭을 말한다.
4. “도시농업인”이란 도시농업을 직접 하는 사람 또는 도시농업에 관련되는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의 책무)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도시농업을 위한 토지·공간의 확보와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도시농업의 육성 및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도시농업인의 책무) ① 도시농업인은 환경친화적인 농법을 사용함으로써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도록 힘써야 하고, 도시농업에 사용되거나 이용된 농자재 등을 안전하게 관리 또는 처리함으로써 생활환경이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힘써야 한다.

② 도시농업인은 구에서 실시하는 도시농업에 관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은 다른 법령 및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 방향 및 목표
2. 도시농업 관련 교육 및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
3. 도시농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방안
4. 도시농업 관련 사업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7조(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도시농업에 관한 주요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도시농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도시텃밭의 조성 및 상자텃밭 보급 등에 관한 사항
3. 도시농업의 기술도입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도시농업 과제 발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시농업 사업에 필요한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연수구의회의 의원 1명

2. 연수구 소속 4 5급 공무원 3명 이내
3. 도시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도시농업 관련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5. 농업 관련 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도시농업 업무담당으로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초빙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3개월 이상의 장기출타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3조(위원회 경비지원) 구청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회의출석 위원에 대한 수당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도시농업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구청장은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농업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도시농업 관련 프로그램의 체계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도시농업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도시농업에 관한 정책개발 연구 및 홍보
2. 도시농업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3. 도시농업 관련 기관·단체 및 시설의 연계체계 구축(네트워킹) 및 지원
4. 도시농업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6. 도시농업 진흥을 위한 각종 행사 개최 및 지원
7. 도시농업 특화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도시농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도시텃밭 조성) 구청장은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각종 유휴지, 자투리땅, 공원 녹지, 그 밖에 소유자가 동의한 토지 및 공간 등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텃밭을 조성하고 경작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사용료의 징수 등) ① 구는 도시농업에 참여하려는 자에게 사용료, 수강료 등(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은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하며, 도시농업 지원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일부 교육을 무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의하여 구가 징수한 사용료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의 세입으로 처리한다.

제17조(상자텃밭의 보급 등) ① 구청장은 개인 또는 단체 등이 손쉽게 도시농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상자텃밭을 보급할 수 있다.

② 상자텃밭 사업에 참여하는 자는 텃밭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방치함으로써 도시미관이 저해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제18조(박람회 등의 개최) 구청장은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농업 박람회 또는 도시농업 관련 포럼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19조(교육) 구청장은 도시농업에 대한 기술을 보급하고, 안전한 먹을거리와 친환경적인 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시농업에 참여하는 자 및 관심 있는 자를 대상으로 도시농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20조(우수사례 발굴 등) 구청장은 자가 퇴비 만들기, 환경 친화적 농법 등 도시농업이 확산·전파 될 수 있도록 우수사례 공모·경진대회를 통하여 예산 지원·포상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1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구청장은 친환경 도시농업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활용하고,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보조금의 지원) 구청장은 도시농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사업에 참여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도시텃밭 조성 및 상자텃밭 보급 사업
2. 도시농업 단체의 육성 및 지원
3. 도시농업에 대한 교육 및 연수사업
4. 도시농업의 기술개발 및 우수사례 발굴, 홍보
5. 도시농업 전문인력 양성사업
6. 그 밖에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3조(사후관리 및 실태조사) ①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도시농

업 보조금의 지원을 받은 개인 또는 단체에게 농작물의 생산 등에 관한 실태를 조사하거나 이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보조금을 지원 받은 자가 허위로 보조금을 지원 받았거나, 보조금을 사업목적 외에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보조금의 반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도시농업 보조금의 지원을 받은 개인 또는 단체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조사행위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할 수 없다.

제24조(준용) 보조금 교부 등에 관해서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